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1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차 례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 경위 ····· 2

나. 활동 경과 ····· 2

다. 회의 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7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7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8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8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모두(冒頭)발언 요지 ····· 9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 13

5. 종합의견 ····· 25

6. 참고자료 ····· 28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 29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 30

[참고자료 3,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서면질의 답변서 ····· 37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2. 심사 일정

가. 선출안 제출: 2024. 12. 9.

나. 선출안 회부: 2024. 12. 10.

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2024. 12. 18.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라. 인사청문

○ 2024. 12. 23.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24. 12. 24.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 경위

○ 2024. 12. 9.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 12. 10. 동 선출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같은 달 11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정점식 위원
- 비교섭단체(1인): 김종민 위원

○ 같은 달 18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보가 있었음.

- 사임: 이용우 위원(더불어민주당), 보임: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

○ 같은 달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나. 활동 경과

○ 활동기간: 2024. 12. 9. ~ 12. 24. (16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4. 12. 9. ~ 12. 17. (9일 간)

○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18.)

- 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처리

○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23.)

-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24.)

-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다. 회의 경과

○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회됨.

○ 2024년 12월 17일 김한규 위원 등 8인으로부터 개회 요구서가 접수됨. 2024년 12월 18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하였음.

○ 2024년 12월 23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의 인사청문회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후 위원들의 주질의(위원별 7분), 보충질의(위원별 5분), 재보충질의(위원별 3분) 및 공직후보자의 답변 등이 있었음.

○ 2024년 12월 24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회 의 경 과

일 시	관련 안건	비 고
<제1차> 2024.12.18.(수)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4.12.23.(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제3차> 2024.12.24.(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본관 319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479건	415건	-	64건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비고
1	감사원	6	5		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1		
3	경찰청	23	10	13		
4	고용노동부	6	6			
5	공무원연금공단	7	6	1		
6	관세청	11		11		
7	교육부	36	6	13	17	
8	국가인권위원회	2	2			
9	국가정보원	1		1		
10	국무조정실	2	2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2	12	10	2	
12	국민권익위원회	4	4			
13	국민연금공단	5	5			
14	국방부	18(5)	4	1	1	
15	국세청	36	34	2		
16	국토교통부	29		2	27	
17	근로복지공단	4(3)	3			
18	금융감독원	8(7)	6	1		
19	농림축산식품부	6	5		1	
20	대법원	90	90			
21	대통령비서실	1		1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비고
22	대한적십자사	4	2		2	
23	문화체육관광부	2				
24	법무부(검찰청 포함)	20	8	12		
25	병무청	11(23)	21		2	
26	보건복지부	3(2)	2			
27	외교부	7(9)		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			
29	한국고용정보원	0(1)	1			
30	한국연구재단	1	1			
31	한국은행	4(5)		2	3	
32	행정안전부	12	11	1		
33	헌법재판소	103	101		2	
합 계		**479 (480)**	**352**	**81**	**58**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1) 서면질의서 제출

○ 서면질의 총 349건

교섭단체	위원명	서면질의 건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
	△ 김한규	43
	김기표	62
	김남희	39
	민병덕	54
	박주민	81
	박희승	50
국민의힘	곽규택	-
	김기웅	-
	김대식	-
	박성훈	-
	정점식	-
비교섭단체(무소속)	김종민	22
합 계		351

○: 위원장, △: 간사 위원

(2)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서면질의 답변서: [별첨]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2인)	김한규, 박주민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기관임.

○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함.

○ 위원님들께서는 정계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엄정히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후보자 또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람.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모두(冒頭)발언 요지

○ 여러 의정활동과 시급한 상황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저는 1969년, 충북 충주에서 2녀 1남 중 첫째로 태어났으며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음. 상황은 아버님이 실직하신 후 바뀌었는데 아버님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무력감은 때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금의 제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 있음.

○ 저는 1987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상경하였고 주변의 권고로 의대에 진학하였습니다만, 수업에 들어가지도, 당시 학교 곳곳에서 열리던 집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방황하였는데, 법을 공부하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여 법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음.

○ 이듬해인 1988년 저는 법대에 들어갔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은 제게 사법시험을 준비할 힘을 주었음.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법관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힐 때쯤 수업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비판적 사유와 성찰이 없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두려운 교훈을 주었음.

○ 저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 소속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6년 넘게 법원에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장으로서, 교육과 사법행정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으며 동료, 선후배 법관들,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너무 큰 가르침과 배려를 받았음.

○ 그동안 저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으며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타당한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였음. 다만, 항상 똑같은 정도로 그러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특히, 처음의 10년은 혼인, 출산, 육아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씩 시들해져 갔음.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 선배법관들이 마련해 준 공간이 젠더법연구회임. 저는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법부로서는 여성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현상을 다각도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2010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소중한데 당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협정 사건을 연구하면서 조약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2011년 말 막 설립된 연구회에 가입하게 되었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소수자 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법원이 인권보장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모임임. 그 외에도 저는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을 하였음.

○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으로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별, 나이, 지역, 이념, 경제적 격차에 의한 갈등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혼란한 정치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음.

○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면서 처음 법관이 되려는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과 교훈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음.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히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음.

○ 오늘 청문회에서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 드리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과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는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 성접대하고 그 여성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준 내용의 김학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음.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서 면소했고, 채무면제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으나, 후보자는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서 적시하였음. 이는 해당 사건을 두번이나 무혐의하고 10년이 지나서 공소한 검찰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고 보여지는데?	○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담았던 것 같음.
○ 김학의 사건 관련 검사들이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않음. 후보자가 재판관 되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건이 들어오면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함.

○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관련 검사가 공소권 남용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된바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은 위법성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 2명은 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 사건 결정문은 봤지만, 기억은 잘 안남. 얼마 지나지 않은 헌재 결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음.
○ 후보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을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하며, 뇌물, 횡령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라 했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 가장 고생했던 판결이라서 그러함
○ 정치권력자에 대한 사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동의하는지?	○ 당연히 동의함.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함.
○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대통령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 가정적으로 답변하겠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한 의무를 침해했다면 그러함.
○ 박정희의 유신헌법 반포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는지?	○ 그렇게 사법부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앎.

○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을 통해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 그렇게 생각함.
○ 민주적 공론 과정을 통해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과 폭력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지?	○ 원칙적으로 그러함.
○ 젠더갈등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계속 고민하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못했음. 다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남성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성평등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려는 용어로 알고 있고 성평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싶음.

2) 헌법재판소의 구성·역할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판관이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임명 안 되는 상황은 입법미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근무하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지?	○ 취지에 공감함. 이러한 공백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또는 추천 정당에 대하여 편향적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추천한 정당의 뜻에 따라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언론에 따르면 후보자의 이념성향은 진보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념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이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에서 27년 가까이 근무해 본 경험상 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존재하더라도 훈련된 법조인들은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정치이념의 양극화가 사법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러한 지적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은?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해 나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토론을 활성화하여 좀 더 나은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음.

○ 국민의힘 인사청문 위원들이 후보자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치적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할 때는 저의 판결과 재판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됐었다는 것만으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고 생각됨.

3)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3.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	
○ 12. 3. 비상계엄 선포 시 우리나라에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조짐은 느끼지 못했음.
○ 12. 3. 비상계엄 선포 시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이 헌법의 틀 내의 권한 행사이고 군 병력 파견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말함. 군병력의 물리력 행사가 질서 유지라고 보이는지?	○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함.
○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침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 없는 위법행위이고 국회 침입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을 확인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함.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는 관련 사건의 쟁점 중 하나라고 알고 있음.

○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행위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 알고 있는지? 헌재 결정례 바뀐 것 있는지?	○ 알고 있음. 결정례 바뀔만한 헌정사의 사건이 없었다고 보임.
○ 12. 3. 비상계엄 선포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처음에는 딥페이크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당시는 법원장이어서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에 조치가 필요해 법원에 가야하는지 생각이 들었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이 있어 마음이 복잡했음.
○ 제22대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된 것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한다 언급함. 상황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 그러함.
○ 내맘대로 안 된다고 경고성으로 군사력을 투입한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임.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판단해주시길 바람.	○ 알겠음.
○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인데, 후보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는지?	○ 개인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정상적 업무에 어려움이 없었고 법원 자체로도 없었던 것으로 앎.

○ 12. 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 정치권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들었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민주주의가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큼.	○ 알겠음.
○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대법관인 선관위원장까지 체포대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닌지?	○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현재 대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음.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어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그렇게 생각함.
○ 대통령이 형사사건보다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 대국민사과도 없고 헌법재판소의 송달도 거부하며 공수처의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대답하기 어려움.
○ 12. 3. 비상계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인데, 당사자인 윤석열대통령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	○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동의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알고 있

임. 후보자가 보기에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규정된 내란죄 구성요건 및 국헌문란의 정의에 따르면 내란행위로 보이는지?	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 등>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견해는?	○ 국회 입법조사처가 151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었는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함.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서 답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부 학자들은 궐위상태에 있을 때는 적극적 행사가, 사고로 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하니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내에서 궐위와 사고는 구분하지 않고 학설로 주장되는데, 헌법적 해명이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궐위의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해야하는데, 사고는 더 길어질 수 있어서 관련 학설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헌법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닌 지위를 논하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권한만 행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임. 헌법재판관	○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후보자 3인의 서면답변, 헌법재판소 모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국회 추천 몫 헌재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탄핵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고,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함. 다만, 탄핵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헌재 심리절차 관련>	
○ 윤석열 탄핵심판 피소추인이 7인 심리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3개 기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받아야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연구한 바 있는지?	○ 연구한 바 없음. 결국 쟁점은 가처분에서의 쟁점과 동일하다고 봄
○ 헌재의 심리절차 관련, 심리절차의 쟁점은 정당성, 신속성, 공정성 3가지임. 정당성의 쟁점은 「헌법재판소법」제23조의 심리 정족수 7인의 문제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장 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한 상황	○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나, 일반 법원의 가처분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가처분 대상이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헌법소원이 취하된다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효력을 상실하겟

임.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피소추인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경우 가처분 결정도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심판이익에 관해서 소의 취하나 기한이 도과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판단에 나아가는 바가 있다고 알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크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헌재에서 직접 위헌, 위법을 판단하여 탄핵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을 때 판단할 수 있음.
○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사실관계 판단이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일 때에는 탄핵심판을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잇고, 그 사실관계 판단이 탄핵심판의 유일한 요소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지 않아 대답하기 곤란함.
<행정수도 이전 관련>	
○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난지 벌써 20년이 지남.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결정례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라고 함.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려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음.

4)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부지방법원 터가 예전 경성형무소 터였음. 그곳에서 애국지사들이 많이 돌아가셨음. 그런 기운이 헌법재판과 후보자 두 분을 배출하게 한 것임. 우리나라가 엄중한 시국인데 우리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림	○ 알겠음.
○ 배우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익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으로 이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인데 특정사건의 대리인에 들어가는 분과 배우자가 같은 조직에 있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해당 재단은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봉급을 지급하지도 않음. 배우자가 해당 사건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재단이 참여하지도 않음. 대법원의 회피나 기피에 관한 규정을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5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언론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데?	○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고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조를 받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 임대차계약은 시가로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반환할 예정임. 이러한 의혹제기로 저희 집 구조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쉬움.

5. 종합의견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15시 45분부터 오후 18시 45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 정계선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였음.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 ①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을 토대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각종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최근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하여 조심스러운 자세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청문위원의 우려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

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음.

① 후보자는 2001년 판사 임용 후 2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업무를 두루 경험하였고,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소양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점

② 여성 법관의 존재가 사법부로서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재직 중 젠더법연구회·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③ 고위공직자 성 접대 뇌물수수 사건 제1심 재판장으로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의 구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점

④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헌법적 소양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밝힌 점

⑤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명한 점

⑥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봉쇄 시도 및 물리력 행사 등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표현한 점

⑦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가 이사장인 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우자와 이사장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의 문제를 소명하였고, 모친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한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시가로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충분히 해명하였다는 점

⑧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충분히 토의·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6.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참고자료 2〕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별첨: 참고자료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위원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간 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국민의힘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정점식
	비교섭단체 (무소속)	김종민

<직원명단>

직 위	직 원 명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박동찬, 이화실
입법조사관	김세현, 박지영, 유항재, 모주영, 이정미, 정수정, 최준호, 이혜미, 문정호, 소만경, 김태현, 박은정, 최한슬, 박진영, 이상민, 김홍규, 최용구, 이강욱
행정실장	정진욱
행정관	임채현, 김기연
주무관	김민옥, 박옥서, 김수자, 임현숙, 이미숙, 이지영
과 장	유규영
주무관 및 법제관보	장윤명, 임희경, 차인창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12.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12. 23.(월) 10:00 마은혁 후보자

2024. 12. 23.(월) 14:00 정계선 후보자

2024. 12. 24.(화) 10:00 조한창 후보자

※ 붙임 1: 의사일정(안)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나.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 중 신문순서 및 위원별 신문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마.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증인 여비 등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붙임 2-1~3」과 같이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위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위원장이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12.18.(수)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4.12.23.(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제3차> 2024.12.24.(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는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24. 12. 23.(월) 14:00

3.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

2024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참고자료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2024. 12.

공 직 후 보 자(정 계 선)

목 차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46

김남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11

민병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54

박주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212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00

김종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63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질의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서 다루어질 중요 쟁점들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위 질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라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제87조 상 '폭동'에 해당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기수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 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2024헌라7).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내란죄의 정범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된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마1109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4년 12월 3일 22시 기준, 대한민국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무회의의 심의 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해당 국무회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비상계엄 선포 시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의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비상계엄 선포 시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계엄법 상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비상계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이전 자신의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국회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폭력 혹은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의 국회 방문일정이 취소되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최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내란죄는 언제 종료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내란죄의 기수가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에 의한 직무정지 없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헌적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에 한계는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과 법령에 대통령 권한 전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실제로 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2선 후퇴를 밝힌다면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2선 후퇴’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저는 ‘2선 후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헌법 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헌법 상 '궐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의 사망,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이 피선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사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2선 후퇴, 국정 위임은 헌법 상 '궐위' 나 '사고'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2선 후퇴'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저는 '2선 후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은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지만,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흔히 두 마리 토끼로 표현되는, 함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일반론 외에 구체적인 탄핵심판 절차진행에 대해서는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제 스스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므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만약 이렇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6명 체제가 가동되는데, 후보자는 재판관 6명이서 헌재 사건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만약 적용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마900).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6명이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가처분 결정으로 내린 결정인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선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이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추천 및 임명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재판관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인데. 초반에야 준비기일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된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선 기일을 다시 다 갱신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손준성 건처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진다고 보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일반론 외에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한 매 재판을 공개 변론을 여는 것에 찬성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의 변론은 공개하여야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일반론 외에 탄핵심판의 절차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결정을 빨리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형사 재판 사건이 나오기 전에 빨리 결론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재가 너무 사건을 일찍 규정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또한, 탄핵소추가 있으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므로,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절차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정형식 재판관이 혼맥으로 얽혀있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상 방탄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특정한 임명권 행사나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의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9.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정확히 어떤 권한등을 대리하는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가?

- 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리하는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도 없습니다.

○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한 행사의 적법 여부 내지 당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39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39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대통령의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39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의 성격과,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성격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 39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인권에 대한 높은 신념,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할 균형 있는 시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투철한 헌법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단호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저는 26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관 생활 중 헌법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헌법 실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판경험, 전문성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법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존경하는 인물이 많아 한 명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독재에 항거하여 스스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는 판결과 그 이유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2018. 10. 5. 선고, 합의부(재판장)

-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 공직임명 대가 등에 기한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그 의미에 관한 판단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여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배석판사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판결과 그 이유는?

○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제 나름대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더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7. 법관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탄핵 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각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법관의 독립성은 무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탄핵으로 법적인 통제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 행사에 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인적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헌법재판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임명권자가 단순한 성별, 출신, 경력이 아니라 후보자의 세평, 철학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전면적 법조 일원화로 법조계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이나 철학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역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사형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가 주장되고, 오랜 기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2007년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존치 또한 주장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지금도 사형제 사건(2019헌바59)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법원의 형태, 이에 소요되는 재정 및 노동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도에 관해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또한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대해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과잉 발부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부분의 수사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죄혐의사실과 대상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압수대상 전자정보 목록이 제대로 작성·교부되지 않는 경우, 그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평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강조한 바 있고, 수사실무 또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일부 기각을 제외하면 지극히 낮아 여전히 과잉 발부로 볼 여지가 있어, 도입논의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외에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3.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법관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사건 수임 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로펌 취업제한 등이 시행되었고, 법원은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의 수립, 국선변호의 확대 등을 시행하여 법원 안팎에서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여전히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법관인사제도의 개선과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기소편의주의나 기소독점주의는 검사가 공익의 담지자임을 전제하여 제도화된 것인데, 최근에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 임의적 기소 및 불기소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소권 행사의 주체 및 그 방식 등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재 위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에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존폐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자의성이나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의 제한 방법, 피해자가 얻는 큰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우리 손해배상 법제와의 체계적 부조화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올바른 결론을 내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6.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과잉 발부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부분의 수사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죄혐의사실과 대상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압수대상 전자정보 목록이 제대로 작성·교부되지 않는 경우, 그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평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강조한 바 있고, 수사실무 또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일부 기각을 제외하면 지극히 낮아 여전히 과잉 발부로 볼 여지가 있어, 도입논의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외에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7.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양형 감경요인이 피해자의 용서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형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양형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양형기준 상향 여부는 범죄 억제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정부의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원칙적으로 정부는 하위규범 마련에 있어서 자율을 가지지만, 자율성의 행사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취지는 법률문언과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와 함께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자료가 되므로,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9.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촉법소년에 관하여는, 어린 나이에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는 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의 소년들을 형사처벌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성범죄 법정형 상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성범죄 처벌 수준에 관하여는 법정형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고, 사법부에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띤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나 상황 등에 맞게 비례성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보석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석방 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실무의 사례, 법조계와 학계의 연구, 외국 입법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와 도입 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판단한 적이 있고, 의견이 나뉘었던 것(합헌 5: 위헌 4)으로 알고 있습니다(2017헌마1113등). 마찬가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견이 나뉘었던 것(합헌 6: 위헌 3)으로 알고 있습니다(2017헌바456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문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의 다양화, 개인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일단 명예가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 가치를 생각하였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비교적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법왜곡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를 도입하면 사법정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법왜곡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법률 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의 도입 여부는 위와 같은 기대효과와 우려, 해외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하여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4. 고위공직자의 청탁 물품 수령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고위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5.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이송 후 15일 내)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하여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거부권의 행사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한계를 가지고,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종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재판지연과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지연 해소, 사법 정치화 우려 불식, 전관예우 방지,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풍부한 재판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관이 정년까지 법원에 계속 남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 부족과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관인사제도의 개선과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8. 법조계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 방향은?

○ 법조일원화의 추진과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신설되고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모든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법조인들을 사법시험 기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 이와 같은 법조계의 이른바 기수 문화는 독립성, 중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조계의 업무 특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세월이 흘러 법조일원화가 정착됨에 따라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기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법조계의 문화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법조인 개개인이 기수보다는 실력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9.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의 독립을 포함합니다.

○ 사법부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입니다. 대법원장이 특정재판의 결과물로 행정부, 국회와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외부의 잘못된 비판이나 청탁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를 표현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연구결과 내지 견해라는 이름으로 개별 재판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지켜지기 어렵고, 사법부의 독립도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법부를 파라미드식 관료조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고,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내부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1심과 2심의 2원화 인사, 법원장 추천제,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 대표회의의 제도화는 법관 독립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의 일환입니다.

○ 물론,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론 등의 외압 및 신변 위협, 신상 공개 등이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종교인 내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종교인에게도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종교인의 특수성과 헌금에 대한 이중과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도 공감됩니다. 다른 한편, 종교단체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 단체이고, 따라서 종교인 내지 종교단체의 수입 상당부분이 비수익사업의 기금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당장 주어진 사건에 얽힌 인권 문제를 가장 많이 숙고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1조 제2항), 관련 법률에 의하면 결국 헌법재판관은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외국[1]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구성원이 동질화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여러 가치를 선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합니다.

○ 다만,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 여부는 사회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1) (참조각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7조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및 예비구성원은 법학 및 정법(政法)학을 전공한 자로 10년간 법조분야 직업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법 제1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로 재판관, 검찰, 대학교수, 공무원 또는 변호사 중에 임명하며, 전원은 충분한 학식과 15년 이상의 전문직 내지 해당 직에 재직 중인 경력을 가진 법률가이어야 한다.

33.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 시행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였는데,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침해확인을 하였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었고(2022헌라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2022헌라4).

○ 그 밖에도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2022헌마1386, 2022헌마1390, 2022헌마1549, 2022헌마1728, 2022헌마1765, 2023헌마24, 2023헌마117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내린 결정이나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수사기관의 폐지 및 신설, 기소권 행사의 주체 등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유관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33.항 답변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최근 속칭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선고하였고 이를 존중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재판지연과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지연 해소, 사법 정치화 우려 불식, 전관예우 방지,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 존엄사 찬반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불필요한 의료 연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환자 본인이 원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조력으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러한 존엄사는 생명윤리에 반하고 그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우며, 존엄사를 강요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적극적인 존엄사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엄사의 도입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제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2023헌마1396호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이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라는 청구 현재 심리 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37.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중 우선시되야하는 것은?

○ 사생활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알권리의 목적과 내용 또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언제나 비교형량의 문제로 돌아가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적인물에 대한 정보의 공개나,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후보자는 명예훼손 형사재판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는 재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사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8. 헌법재판관 자격요건 완화 및 확대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위 3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9.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보자가 생각하는 진로는?

○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퇴임 후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40. 법관의 개인 SNS를 통한 의견 개진에 관해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 내 관련 규범으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과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경우와 관련한 징계사례를 보면, 소셜미디어를 업으로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업무 중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림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법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법관도 직무 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므로,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법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제되고 균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7추127).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관도 직무 외에서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러한 의견개진만으로 탄핵, 징계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률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여야 하고, 법관으로

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외관의 형성에도 조심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행동의 기준을 삼아 왔습니다.

41.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고민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또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헌법적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원칙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을 하면서 간혹 엄격하게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원칙들이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데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현행 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지난 개헌 후 40여년이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그 사이 일어난 많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헌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충돌하는 전통적 헌법 해석이 있는지?

○ 헌법 해석 및 법리가 다투어지는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의 변호사 재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는 제척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기피신청은 많이 이루어지나, 실무상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어 제도의 형해화를 지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 한편, 예전부터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간이) 각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아, 재판부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는 소송 지연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 다만, 실무상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 항고, 재항고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관인사로 재판부 변동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기피신청의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피신청을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45.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법관의 업무 효율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전자소송,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140개 주요 사법연수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사법연수기구 국제콘퍼런스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미 AI가 판결초안을 작성하는 국가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재도 민사소송법에 선정당사사자 소송 등 다수의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등 특정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한 법률들이 있으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결국 집단소송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 제도의 장·단점, 도입 시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통해 현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마약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중에도 특히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속도로 활성화 되면서 마약공급책 등이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 청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액상이나 합성대마 등이 전자담배 등의 형태로 판매되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의 경우 죄질이 더욱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서는 단약과 치료를 위한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퍼진 상황에서 관련자들 특히 마약 공급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벌의 범위와 양형기준은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48.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가 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의 조직 규모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렉카 등의 사적 제재가 유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지적이라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적 제재를 이유로 폭로와 협박·공갈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로, 그 피해의 파급력·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오프라인에서의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사건에 비하여 죄질이 더 높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로 인한 피해의 양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과거 검찰에 ‘별건수사’의 관행이 있어 그 위법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정보들을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위법한 별건 수사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사관행은 사라져야 하고 사법부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대상을 최대한 선별하고, 증거채택 단계에서도 ‘직접적 관련성’을 세심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법의 해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

○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한 바와 같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 위 질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고려할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변화한 가치관 등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안정성과 유연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선언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2.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 여론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고, 이에 대하여 그 책임에 비례하는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수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설정 취지와 형량 범위가 개별 재판에서 반영되어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3.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 대부분의 재판관이 무죄를 받으며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소위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심리 계속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법관 스스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할 뿐만 아니라, 처신과 언행을 항상 각별히 유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 다짐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 만약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할 뿐만 아니라, 처신과 언행을 항상 각별히 유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민주적 정당성 이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 질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구성되는 권력기관이 대통령과 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 현행 헌법에 따라 채택된 이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57.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로 권한쟁의심판이 있고, 그 외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소원심판, 의회를 통해 제정된 법률에 관한 헌법심사인 위헌법률심판, 주요 권력기관의 직무수행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탄핵심판 등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업무 그 자체가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8. 계엄법의 필요성과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최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단체행동'을 제외하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시행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할 때까지로 규정하는 취지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계엄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숙고를 거쳐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9. 헌법 해석과 판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 우선은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 지시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적 지휘·감독권도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언론,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헌법재판관 역시 직무의 공정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60.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설득력 있는 해석이 중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를 국민들께 가감 없이 설득력 있게 결정문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 곧 진행될 탄핵 심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 이는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 시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나 정신, 정치적·시민적 역량은 무엇인지?

○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 있는 저로서는, 탄핵 심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지 고민하거나 그러한 전달을 의도하는 것에 우선하여, 헌법재판관의 소임에 따라 해당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독재에 항거하여 스스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온 역사가 있고, 최근까지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몸소 광장으로 나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 역량 수준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헌법의 핵심 원칙이나 정신 역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알고 있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2.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가 충돌할 때, 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설명할 것

○ 재판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회 변화 역시 헌법의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헌법이 살아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고, 헌법적 가치 역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발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 중 '법의 원칙'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앞서 51번 답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변화한 가치관 등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김남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많아 한 명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독재에 항거하여 스스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존경하는 법조인도 많습니다만, 동료와 선후배의 글을 인용하여 후보자가 한기택 판사를 소개한 부분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 한기택 판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논리적이고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가슴을 지녀 늘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옆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재판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장애인의 이야기도 성의를 다해 듣고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으며, “암호문 같은 판결문이나 공허한 판결문에서 벗어나 눈앞에 있는 피고인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으며, 고등학교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하면서 “언제나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피어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학생이었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도 열정을 지니고 세상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3. 후보자 좌우명은 무엇인가.

○ 후보자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좌우명은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배우고 겸손하게 성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의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후보자는 정의란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정성' 및 '형평성'이란 개인이 각자 자아를 실현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 및 제도의 도움과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전제하에, 도식적으로 능력주의에 따른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손쉽게 무시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노동자의 인권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킨 의인입니다.

○ 전태일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을 기록한 조영래 변호사의 삶과 문장까지 젊은 시절 후보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6.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1건, 아쉬움이 남는 판결 1건

○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2018. 10. 5. 선고, 합의부(재판장)

-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 공직임명 대가 등에 기한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그 의미에 관한 판단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여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배석판사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 가장 아쉬움이 남는 판결

-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제 나름대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7. 후보자 법관으로 재직하며 판결했던 사건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유는?

○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판결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어느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및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감히 말씀 드립니다만, 제가 지명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 다만, 저는 26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관 생활 중 헌법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헌법 실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판경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9.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인권에 대한 높은 신념,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할 균형 있는 시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투철한 헌법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단호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법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와 같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10.항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굳이 꼽자면, 첫째,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이 가족 내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이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의 독립을 포함합니다.

○ 사법부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입니다. 대법원장이 특정재판의 결과물로 행정부, 국회와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외부의 잘못된 비판이나 청탁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를 표현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연구결과 내지 견해라는 이름으로 개별 재판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지켜지기 어렵고, 사법부의 독립도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법부를 파라미드식 관료조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고,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내부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1심과 2심의 2원화 인사, 법원장 추천제,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 대표회의의 제도화는 법관 독립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의 일환입니다.

○ 물론,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론 등의 외압 및 신변 위협, 신상 공개 등이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헌법재판소의 재판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점,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합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판단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된 존재 이유이므로,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역할 충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매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건적체가 심해지고 적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헌법재판 진행을 위하여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헌법재판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임명권자가 단순한 성별, 출신, 경력이 아니라 후보자의 세평, 철학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전면적 법조 일원화로 법조계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이나 철학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역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2018년 2,427건, 2019년 2,730건, 2020년 3,241건,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미제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국가·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단심제이므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의견 취합 및 광범위한 입법례 조사·검토,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인 연구부 인력 확충 및 장기미제부의 한시적 신설·운영('23년 2월), 관련 연구용역과 조사연구의 실시 등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사건 심리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보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사회적 관심도나 국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 고려를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司法機關)으로서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재판관으로서 객관화된 직무상 양심이지, 개인의 신앙, 도덕심, 세계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누구의 지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행사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 법관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사건 수임 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로펌 취업제한 등이 시행되었고, 법원은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의 수립, 국선변호의 확대 등을 시행하여 법원 안팎에서 전관예우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여전히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법관인사제도의 개선과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19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관은 이슈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당장 주어진 사건에 얽힌 사회·인권 이슈를 가장 많이 숙고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가 주장되고, 오랜 기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2007년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존치 또한 주장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지금도 사형제 사건(2019헌바59)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언론에 자주 보고되고는 하여,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에 대하여는 개선과 교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년법 폐지 이전에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 본래의 입법목적과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남녀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구분에 근거한 차별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모든 성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는 관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5.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그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성별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

○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질의 답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합니다)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계속 호명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함에는 성별 간 종사 직종의 차이, 근무 기간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동일 노동'을 판단함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불문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때는 대부분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90%가 여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육아지원, 모성보호 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고,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 다양한 갈등의 양상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의 양상 3가지와, 그중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꼽아 주십시오.

○ 우리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사회적인 갈등 역시 그 흐름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젠더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념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모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특히 젠더 갈등이 시급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했음.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영역별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을 마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와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차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법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그 제정 여부와 범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국민들

께서 그 제정 여부와 범위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아동 성범죄자의 국내 처벌 및 양형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의 판단 요소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29. 우리나라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디지털성범죄자의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전자기기의 보편화 및 소형화로 인하여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SNS와 같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피해 확산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아동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건마다 양형의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사형제 존폐와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

○ 사형에 관하여는, 22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법정형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고, 사법부에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띤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은 2018. 10. 30.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종합하여,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3다61381).

○ 한편, 작년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이 그 돈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공탁신청을 불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공탁신청 불수리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헌법재판

관 후보자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장애 상태가 초래된 애초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면, 질의에 담긴 문제의식에 동의할 만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일본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의 성격은 위와 같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우리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금전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일본 측과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국익이 훼손된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및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논쟁과 일본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국익이냐의 문제가 남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분명히 합의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전제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국익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따라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31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약 체결국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 등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일본 정부 책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 후보자가 해당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경과에 대해 알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위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 후보자가 해당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경과에 대해 알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2018. 10. 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3다61381).

○ 대법원의 이러한 결론은 국제법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후보자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2018. 10. 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3다61381).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 법관으로 재직하며 판결했던 사건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유는?

○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판결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어느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특별히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2018. 10. 5. 선고, 합의부(재판장)

-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 공직임명 대가 등에 기한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그 의미에 관한 판단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여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배석판사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4.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판결 1건

○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판결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어느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및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제가 추천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 다만, 예비판사 기간을 포함하여 26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고,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관 생활 중 헌법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헌법 실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판경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6.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인권에 대한 높은 신념,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할 균형 있는 시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투철한 헌법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법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와 같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7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징계절차 규정 미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 미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을 어떠한 형식으로 마련할 지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제도를 입법화하였을 때 구체적 규정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굳이 꼽자면, 첫째,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이 가족 내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이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의 독립을 포함합니다.

○ 사법부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입니다. 대법원장이 특정재판의 결과물로 행정부, 국회와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외부의 잘못된 비판이나 청탁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를 표현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연구결과 내지 견해라는 이름으로 개별 재판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지켜지기 어렵고, 사법부의 독립도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법부를 파라미드식 관료조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고,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내부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1심과 2심의 2원화 인사, 법원장 추천제,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 대표회의의 제도화는 법관 독립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의 일환입니다.

○ 물론,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론 등의 외압 및 신변 위협, 신상 공개 등이 법관의 독립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권과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지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권과 함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양 기관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점,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합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양 기관의 역할과 판단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 양 기관의 주된 존재 이유이므로,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역할 충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한정위헌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존중,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의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주문 형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의 변형결정에 대해 법적인 기속력을 부여하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권한과 충돌될 여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을 비롯한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 문제는 양 기관이 오로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 아래 함께 숙고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수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유사 입법례 및 판결례 등을 조사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헌법재판 동향을 꾸준히 살피면서 헌법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권과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지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권과 함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양 기관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점,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합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양 기관의 역할과 판단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 양 기관의 주된 존재 이유이므로,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역할 충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헌법재판소의 재판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점,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합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판단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된 존재 이유이므로,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역할 충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매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건적체가 심해지고 적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헌법재판 진행을 위하여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헌법재판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임명권자가 단순한 성별, 출신, 경력이 아니라 후보자의 세평, 철학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전면적 법조 일원화로 법조계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이나 철학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역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법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9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1. 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 저는 26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균형감 있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관 생활 중 헌법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헌법 실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판경험, 전문성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2018년 2,427건, 2019년 2,730건, 2020년 3,241건,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미제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국가·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단심제이므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의견 취합 및 광범위한 입법례 조사·검토,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인 연구부 인력 확충 및 장기미제부의 한시적 신설·운영('23년 2월), 관련 연구용역과 조사연구의 실시 등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사건 심리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보는지?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재판관으로서 객관화된 직무상 양심이지, 개인의 신앙, 도덕심, 세계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누구의 지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행사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관 스스로도 권력이나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근거하여 사건에 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5.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 법관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사건 수임 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로펌 취업제한 등이 시행되었고, 법원은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의 수립, 국선변호의 확대 등을 시행하여 법원 안팎에서 전관예우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여전히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법관인사제도의 개선과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2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7.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퇴임 후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28.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던 사건의 건수와 목록(사건번호 또는 판례번호)은 무엇인가요?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적 쟁점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서울행정법원 2001. 6. 15.자 2000아1345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03. 9. 25. 2001헌가22)을 하였습니다.

29.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은 해당 사항이 없고, 직계존속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촌 이내 친인척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지?

○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은 해당 사항이 없고, 직계존속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촌 이내 친인척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또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정당·시민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2005년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 정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4. 후보자가 국내외 공무출장 또는 해외연수에 배우자,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국가 및 도시, 체류기간, 사유, 관련 비용 부담은 누가했는지 상세 적시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달랐던 적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인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사유

○ 후보자는 2021. 10. 10. 동생에게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생의 전세자금 관련이고, 마침 후보자는 이자가 거의 없던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이 있어 무이자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계좌로 변제받고 있습니다. 차용증과 변제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첨부된 재산부속서류(50-51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사유와 증빙자료, 또한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자료 제출에 동의하였으니, 해당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9.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논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서 논문 표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 후보자의 자녀는 초·중·고·대학(원) 등 재직 당시 각종 인턴(쉽)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등 적용 가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아래 '계엄법' 및 '국회법' 개정안 관련 후보자의 의견

- (계엄법 개정안 1) 첫째,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함.

- (계엄법 개정안 2) 둘째,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이를 삭제함.

- (계엄법 개정안 3) 셋째,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하지 않아 위헌,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함.

- (국회법 개정안) 넷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함.

○ 최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단체행동'을 제외하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시행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할 때까지로 규정하는 취지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계엄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숙고를 거쳐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3.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하여, (의안번호 2204700) 및 관련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아래 5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 (2)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 (3)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 (4)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

- (5)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견하고 후보자가 의견을 내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숙고를 거쳐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4.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일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부

○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이송 후 15일 내)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하여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거부권의 행사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한계를 가지고,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종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도 없습니다.

○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치적인 현안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로스쿨 졸업자의 5년 내 응시횟수 5회 제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이른바 '오탈자'가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학조차 금지하는 것이 응시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 의견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고(2022헌바67등, 2021헌마392등, 2018헌마733등, 2018헌마739등, 2017헌마387등, 2016헌마47등), 변호사시험 무제한 응시로 인한 인력 낭비 방지 등과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위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자가 설령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2016헌마47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2023헌마1385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는 20번 이상의 거부권 행사해 왔음. 거부권 행사 사안별 후보자의 의견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건별 의견을 의미)

○ 44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8.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2,3조 입법 필요성과 그 합헌성에 대한 후보자 의견,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상세히 작성 바람

○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제3조)를 제한하고, 위 법상 사용자(제2조 제2호) 및 정당한 노동쟁의(제2조 제5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위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과정 등 입법절차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3헌라3).

○ 법원 내에서도 종전의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에 앞서 가압류를 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어 왔습니다만, 위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표결이 반복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던 이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법원의 형태, 이에 소요되는 재정 및 노동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9.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이 대법원 계속 중임. 사실심에서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은 기어이 상고하여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번 대법 판결 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도 국가가 부득이 상고해야 한다고 보는지?

○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외에도 관련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수용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사건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인권 유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피해자 배상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 사건 상고의 당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0.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탄핵소추, 정당해산 등의 형태로 사법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의견

○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면서, 전통적으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이슈가 소송사건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지는 현상(정치의 사법화)이 발생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 정치의 사법화가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을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의 사법화로 인하여,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역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외관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1.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 판단하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의견

○ 50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검사탄핵에 대한 의견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탄핵소추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추권 남용이 된다는 일부 학설상 견해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다수의 탄핵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였는데,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침해확인을 하였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었고(2022헌라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2022헌라4).

○ 그 밖에도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2022헌마1386, 2022헌마1390, 2022헌마1549, 2022헌마1728, 2022헌마1765, 2023헌마24, 2023헌마117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내린 결정이나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사법행정기구의 비법관 구성에 대한 의견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참고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사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객관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5.16 군사정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16 군사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은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절차에 반한 군사력의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된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후보자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2. 1972년 박정희의 유신 계엄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1972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3.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12·12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4.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12·12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5. 지난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질의도 위 사건에서 다루어질 중요 쟁점들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지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와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들며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거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등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장군 등 군인들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12/12)을 통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 헌법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조치 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포고령 등의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96노1892)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동의하십니까?

○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96노1892)에 따르면,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와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 서울고등법원은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그 밖에 혁명이 아니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외포시켜 헌법상의 입법권행사나 기타의 권한행사를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이를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여러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써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수사까지 포함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탄핵 심판에 임하시겠습니까?

○ 아직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상황을 가정하여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우나,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탄핵 심판 및 계엄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선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헌법재판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17.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내에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계엄에 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탄핵사유 합치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수사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와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경우 등을 구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치적인 현안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건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혐의가 너무 명확하고, 국정공백이 예상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탄핵 사건들(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심판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선고된 2016헌나1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건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존중합니다.

22.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이 위해한정도'의 중대함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탄핵 사건들(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후보자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대하시겠습니까?

○ 16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일반론 외에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 심판절차 중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24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탄핵 사건들(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현재 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사건의 심리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 조항 부분의 효력을 임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위 조항 부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6명의 정원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의 찬성이 있다면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치가 필요 없는 심판정족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180일 내에 이뤄졌지만 법관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은 180일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를 180일 초과한 헌법재판소의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심판기간을 정한 부분은 훈시적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선별, 지정재판부의 권한 확대, 수명재판관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크게 기인합니다.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관해 일의적으로 규정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후보자는 정의란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정성' 및 '형평성'이란 개인이 각자 자아를 실현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 및 제도의 도움과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전제 하에, 도식적으로 능력주의에 따른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31.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후보자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여지던 사회 통념과 그 통념에 따른 법리를 넘어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하였고,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선고한 판결 중 성폭력 범죄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결에는 다음 판결이 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 공무원인 40대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을 20대 초반으로 속이고 갓 13세를 넘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옷이나 신발 등을 사주면서 6개월간 피해자와 32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하였음

○ 후보자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와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우월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직 미성숙하고 왜곡된 자아와 성의식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선언함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됨

○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한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이었음에도,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점을 꿰뚫어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됨

○ 후보자는 민사소송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원고(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에 원고(피해자) 주소 중 일부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민사소송법(2023. 7. 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된 것)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63조 제2항)을 신설하여 2025. 7. 12.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1(회사)의 피용자인 피고2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원고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피고1이 피고2의 다른 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1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당시로서는 높다고 평가되는 금액(4,00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실질화하

였습니다. 이후 젠더법연구회에서는 하급심 판결례 등을 조사하여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후보자는, 피고인이 의붓딸(20세, 지적장애 3급)을 강제추행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4)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딸 몸에 손대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였고,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여, 7세)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09)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의 부족 등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32.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인권에 대한 높은 신념,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할 균형 있는 시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투철한 헌법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단호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 헌법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추진할 과제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법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다양한 가치가 대립하는 작금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갖고 매 사안마다 헌법가치를 투영하여 재판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외에 다른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또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춘 인재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점을 헌법연구관 등의 선발 절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 내에서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항쟁을 수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 중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항쟁을 추가하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운동 및 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므로 이를 헌법에 수록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위 운동 및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 전문에 위 운동 및 항쟁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36.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심판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만 규율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소정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과거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제에 대하여 여러 개헌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38.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의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 대신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개헌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기본권 보호의무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39. 기존의 영장청구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은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40.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행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는 개헌은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41. 남녀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구분에 근거한 차별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모든 성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는 관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2.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영역별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을 마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와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차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법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그 제정 여부와 범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그 제정 여부와 범위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2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저는 26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균형감 있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관 생활 중 헌법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헌법 실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재판경험, 전문성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지는 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 여성할당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성할당제에 관하여는 남성이 불안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는 형평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젠더갈등이 극심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여성할당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성할당제가 실시될 분야와 그 정도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관은 이슈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당장 주어진 사건에 얽힌 사회·인권 이슈를 가장 많이 숙고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생활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알권리의 목적과 내용 또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언제나 비교형량의 문제로 돌아가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적인물에 대한 정보의 공개나,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후보자는 명예훼손 형사재판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는 재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사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9.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임신중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7헌바127).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정한 입법시한인 2020. 12. 31.이 경과하여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에, 낙태는 처벌도 받지 않지만 합법적인 의료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 공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50. 외국인 근로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되고,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되지만,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4헌마367).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며,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이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존중하며, 과거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현행 형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타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원천금지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사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및 개인의 자유실현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에는 여러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등 기타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판단한 적이 있고, 의견이 나뉘었던 것(합헌 5: 위헌 4)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의 다양화, 개인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일단 명예가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 가치를 생각하였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비교적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최근 21만 여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배,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마909호로 계류 중, 2024. 10. 10. 접수).

○ 게임도 영화, 노래 등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민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문화 콘텐츠이며 게임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건의 중대성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집회·시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인으로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집회 또는 시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2017도9146 판결)라고 판시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를 형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더 이상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조 제1항), 최저임금제의 시행 자체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9,680원이었고, 2025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1.7% 인상된 10,03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정한 최저임금액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의 책정은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7.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바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에 명시된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702).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차별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702).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노동전문법원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법원의 형태, 이에 소요되는 재정 및 노동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 노동쟁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노조법 3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제3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 내에서도 종전의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에 앞서 가압류를 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어 왔습니다만, 위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표결이 반복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던 이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대법원 해석을 전제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 헌법재판소가 내린 해석은 선례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만, 업무방해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결정을 내린 사안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최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존중합니다.

63.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이전 특검 도입 사례들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여당을 배제하는 특검후보 추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권한 행사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은 원칙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그 비중의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과 원칙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와 더불어 3자 간에 다양한 헌법상 권한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5.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제약이 존재하여 무제한적인 거부권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이송 후 15일 내)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은 문언상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뿐 실질적인 행사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론적 이해 외에 그 밖의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헌법상 감사원은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 감사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6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가 주장되고, 오랜 기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2007년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존치 또한 주장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지금도 사형제 사건(2019헌바59)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에 대하여는 개선과 교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년법 폐지 이전에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 본래의 입법목적과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9. 후보자는 존엄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불필요한 의료 연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환자 본인이 원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조력으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러한 존엄사는 생명윤리에 반하고 그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우며, 존엄사를 강요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적극적인 존엄사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엄사의 도입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제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2023헌마1396호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이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라는 청구 현재 심리 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70.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위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2013헌다1).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비동의간음죄 도입[2]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관련하여, 비동의간음죄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으로, 유형력 모델인 현행 형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비동의간음죄가 형사처벌된다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피고인의 실효적인 방어권 보장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유형력 모델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2011년, 2018년,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일본을 비롯하여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개념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하는 등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도 비동의간음죄에 가까이 가고 있고, 동의유무 판단에 대한 심리방법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에 산재해 있는 성폭력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 폭행과 위력의 구분, 강제추행에서의 최협의설 폐기가 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등 여러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동의 모델에 기반하여 형법과 흩어진 성폭력 범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간음죄를 도

2) 서면질의서에는 ‘폐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입’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아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입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외국의 입법례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이미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존중합니다. 다만, 국방의 의무이행에 상응하는 국가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 국가보안법 존치 논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가보안법이 과거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는 결국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제7조 제1항)과 이적표현물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2023. 9. 26. 2017헌바42등)을 한 바 있고, 현재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4헌바134) 사건 등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내부와 관련된 사건을 일반 법원 등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군 관련 사건의 맥락과 내부적 사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설치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군사법원의 재판이 일반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 조직의 특수성과 무관한 형법상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통하여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주민소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또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결국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자격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의료계의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많은 사건들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17헌마1343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신사법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8.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법무부 산하에 외부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니며 이는 위헌결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변협 및 시민사회).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의 개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3. 3. 23. 내려졌습니다(2020헌가1등).

○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를 존중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며,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독립된 중립적 기관'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구금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18개월 이후에도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보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의원실 등은 재보호를 인정할 경우 이론상 기간제한 없는 구금이 가능하다며, 이는 위헌결정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의 개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3. 3. 23. 내려졌습니다(2020헌가1등).

○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를 존중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구금기간의 상한을 최대 36개월(18개월+18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36개월의 상한기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일시적, 잠정적 강제조치'라고 본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의 개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3. 3. 23. 내려졌습니다(2020헌가1등).

○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를 존중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부패, 경제범죄) 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모법위임 위반이란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특정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인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정부는 하위규범 마련에 있어서 자율을 가지지만, 자율성의 행사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취지는 법률문언과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와 함께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자료가 되므로,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질의주신 사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사회적 관심도나 국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는 흔히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헌법재판소를 정의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고려를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를 따져 헌법과 법률의 의미를 왜곡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司法機關)으로서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은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 지시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적 지휘·감독권도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언론,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헌법재판관 역시 직무의 공정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4.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투철한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헌법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법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와 같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5. 현재 헌법재판소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2018년 2,427건, 2019년 2,730건, 2020년 3,241건,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미제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국가·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단심제이므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의견 취합 및 광범위한 입법례 조사·검토,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인 연구부 인력 확충 및 장기미제부의 한시적 신설·운영('23년 2월), 관련 연구용역과 조사연구의 실시 등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사건 심리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판사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후보자는 재판에 임하면서 사건에 따라 경중을 두지 않고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송구스럽게도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되는 판결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법관 생활을 하면서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결론을 내렸던 기억에 남는 사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사건의 판결문은 후보자가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1, 2015. 1. 23. 선고, 합의부(재판장)

○ 공무원인 40대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을 20대 초반으로 속이고 갓 13세를 넘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숙식을 제공하고 옷이나 신발 등을 사주면서 첫날부터 6개월간 피해자와 32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와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우월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직 미성숙하고 왜곡된 자아와 성의식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한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이었음에도, 이 사건의 본질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점을 꿰뚫어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판결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09, 2014. 4. 11. 선고, 합의부(재판장)

○ 계모인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당시 6세)를 때려 좌측 대퇴골 골절을 가하고,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당시 6세)에게 화상을 가하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당시 7세)의 머리, 옆구리,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방어능력이 전무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양형기준상 상

해치사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초과한 중형(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18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지만, 후보자는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의 부족 등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판결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2018. 10. 5. 선고, 합의부(재판장)

○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 공직임명 대가 등에 기한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그 의미에 관한 판단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여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배석판사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13, 2020. 2. 18. 선고, 합의부(재판장)

○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1이 2018. 9. 16.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오던 수련생인 피해자(여, 당시 32세)를 목검 등으로 때려 압궤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1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오던 위 도장의 원장인 피고인2 및 강사인 피고인3, 4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증거를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의 휴대폰 4대를 은닉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1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피고인2 내지 4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여 말을 맞추고, 중요 증거인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는 공판검사에게 계속하여 석명을 하였고, 이에 공판검사가 추가로 수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1의 폭행치사 및 피고인2 내지 4의 증거은닉 범행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자칫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재판부의 노력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준 것 같아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745(병합), 2019. 11. 22. 선고, 합의부(재판장)

○ 이 사건은 '김학의가 윤중천으로부터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성접대, 금품 수수 등의 뇌물수수를 하였고, 최규홍으로부터 2000. 10.부터 2011. 5.까지 뇌물을 수수하였고, 김학헌으로부터 2000. 6.부터 2009. 12.까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6. 4.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 뒤늦은 수사로 기소가 늦어져 상당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증거도 부족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7. 판사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제 나름대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8. 판사재직 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9. 판사재직 시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서울행정법원 2001. 6. 15.자 2000아1345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03. 9. 25. 2001헌가22)을 하였습니다.

10.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후보자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고민은 '소수자 권리 보호' 특히 '여성 인권 및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사명의 발견과 이를 이루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연구와 토론에 참여해 왔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젠더 관련 주요 연구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0. 6.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판례를 중심으로」
◯ 2014. 7.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법원, 여성법관, 젠더」
◯ 2014. 젠더법연구회 심포지엄 논문 발표
「성폭력 심리절차의 새로운 쟁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재검토」
◯ 2015. 젠더법연구회 학술팀장
◯ 2017.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지정토론
◯ 2019. 2.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참석
◯ 2020. 9. 젠더법연구회 포럼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지정토론
◯ 2023. 사법연수원 발간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2023' 중 '16.

여성의 권리’ 부분 집필 참여

◯ 2023.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회장

○ 후보자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여지던 사회 통념과 그 통념에 따른 법리를 넘어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하였고,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선고한 판결 중 성폭력 범죄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결에는 다음 판결이 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 공무원인 40대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을 20대 초반으로 속이고 갓 13세를 넘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옷이나 신발 등을 사주면서 6개월간 피해자와 32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하였음

○ 후보자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와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우월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직 미성숙하고 왜곡된 자아와 성의식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선언함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됨

○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한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이었음에도,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점을 꿰뚫어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됨

○ 후보자는 민사소송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원고(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에 원고(피해자) 주소 중 일부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민사소송법(2023. 7. 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된 것)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63조 제2항)을 신설하여 2025. 7. 12.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1(회사)의 피용자인 피고2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원고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피고1이 피고2의 다른 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1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당시로서는 높다고 평가되는 금액(4,00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실질화하

였습니다. 이후 젠더법연구회에서는 하급심 판결례 등을 조사하여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후보자는, 피고인이 의붓딸(20세, 지적장애 3급)을 강제추행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4)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딸 몸에 손대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였고,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여, 7세)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09)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의 부족 등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중이던 2024. 10. 25.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피해자국공선변호사 간담회’를 진행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법정에 피해자 변호인 좌석 설치,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 출석 여부 적극 확인,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진술권 보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피해자가 두텁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및 결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결정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의 개인적인 평가를 밝혀주십시오.

○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특히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는 실제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3.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위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2013헌다1).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정부에게만 준 이유,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규범적 태도는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2013헌다1).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폐지 여부, 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정부에게만 부여한 구조에 관한 평가는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문제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5.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와 관련

(1) 재판헌법소원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변형결정의 기속력

- 대법원은 국각배상법상 구상권 사건등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헌재의 변형결정이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나 대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관습법

-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헌재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위와 같이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권과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지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권과 함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양 기관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점,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합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판단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 양 기관의 주된 존재 이유이므로,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역할 충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은 대통령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 내지 지명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에 균등하게 재판관 선출·임명·지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성과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경우 전원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선출 몫(3인)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이처럼 규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의 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대법관의 경우와 달리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과 관련하여서만 국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처럼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선출 방식을 대법관의 선출 방식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에 균등하게 재판관 선출·임명·지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성과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도 국회에서 관여

하는 것이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 및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고(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4항). 그런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인 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 잔여임기설과 6년 신임기설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전임 박한철 재판소장, 이진성 재판소장, 이종석 재판소장의 경우 재판관의 잔여임기로 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9.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중 한 명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재판관인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면 정족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관 수에 대하여도 변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할지 여부는 헌법재판관수, 헌법재판소의 운영 현황 및 헌법재판관과 사무처장의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헌법재판관 등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 유형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결정을 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의 궐위 시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임기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1.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는 의견과 법률로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고(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4항). 그런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인 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하여, 헌법에서 재판소장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흠결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법에서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재판소장의 임기는 당연히 재판관의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및 2017년 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헌법상 헌법재판제도 개선의견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헌법 또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법

률 검토를 거쳐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헌법재판소장 임명 또는 임기를 가정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면,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어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인정됩니다(헌법 제52조, 제54조). 현재 법원도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사법부 독립과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알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개정의 문제가 있으니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심리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며, 심리 기간 단축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2018년 2,427건, 2019년 2,730건, 2020년 3,241건,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미제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국가·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단심제이므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의견 취합 및 광범위한 입법례 조사·검토,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인 연구부 인력 확충 및 장기미제부의 한시적 신설·운영('23년 2월), 관련 연구용역과 조사연구의 실시 등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사건 심리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위 23번의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5. 개헌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헌이 이뤄진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현행 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지난 개헌 후 40여년이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그 사이 일어난 많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헌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와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부분이나 주권자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역시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97헌가4)라고 하여 헌법상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를 존중하고, 저항권의 개념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7. 5. 16. 군사정변에 대하여 이를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시각과 군사혁명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16 군사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은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절차에 반한 군사력의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된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후보자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28.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12·12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인사들이 1980. 5. 17.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적 항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9.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 중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하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므로 이를 헌법에 수록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30.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12년 13세 미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었고, 2015년에는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지만, 여전히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하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소시효 배제대상의 확대는 각국의 입법례, 학계·법조계 및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가 주장되고, 오랜 기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2007년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존치 또한 주장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지금도 사형제 사건(2019헌바59)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알코올 섭취 등을 핑계로 심신미약 감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 또한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는 범죄를 유발하는 면이 있어,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도 음주에 나아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형사정책적 관점과 형법상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3.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피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전통적 형사사법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필요하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를 징벌하고 엄벌하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복이나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복적 사법절차는 전통적인 형사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한 낙인 및 탈사회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장치로서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재 위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에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존폐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자의성이나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의 제한 방법, 피해자가 얻는 큰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우리 손해배상 법제와의 체계적 부조화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올바른 결론을 내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35.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국가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이 기본권행사라는 이름으로 국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수단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위와 같은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6.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어린 나이에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청소년들을 엄벌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예방적 교육이나 심리 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7.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발히 기소가 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은 등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21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있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던 것(합헌 5: 위헌 4)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명예감정의 보호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의 다양화, 개인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일단 명예가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 가치를 생각하였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등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비교적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혐오 표현이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혐오 표현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인종, 종교, 민족, 국가, 성 등과 관련하여 소수자였던 대상을 향한 적대감을 표현하여 그 밖의 집단과의 차별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는 피해 소수자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등 해악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독일에서도 혐오 표현을 범죄화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형사적인 접근방식도 있지만,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민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의 인격권 등 대립되는 이익들을 면밀히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9.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4헌바68등).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구체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0.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관은 이슈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당장 주어진 사건에 얽힌 사회·인권 이슈를 가장 많이 숙고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

○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검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였는데,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침해확인을 하였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었고(2022헌라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2022헌라4).

○ 그 밖에도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2022헌마1386, 2022헌마1390, 2022헌마1549, 2022헌마1728, 2022헌마1765, 2023헌마24, 2023헌마117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내린 결정이나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공익의 담지자임을 전제하여 제도화된 것인데, 최근에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 임의적 기소 및 불기소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소권 행사의 주체 및 그 방식 등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1.항과 답변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최근 속칭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선고하였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영장 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정보인권 침해 여부가 근래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수사상 또는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우나, 오로지 수사나 정보수집의 편의만을 앞세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탈법적으로 감청이 이루어지는 수사관행이 있다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44.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과 폭동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5.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가 그 요건의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왕조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국헌문란의 죄(내란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죄의 수단이 계엄이므로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란을 한 경우에 그 범죄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서 계엄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울고등법원은 "물론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가 그 요건의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한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범죄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형사소송에서조차 계엄요건의 구비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하여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왕조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국헌문란의 죄(내란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죄의 수단이 계엄이므로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란을 한 경우에 그 범죄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서 계엄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5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계엄법 제2조에서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후보자는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인정하나?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및 탄핵 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질의도 위 사건에서 다루어질 중요 쟁점들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 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범위의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적 심사대상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나?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고도의 통치행위의 사법적 심사대상 해당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의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윤, 계엄사태의 경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

○ 1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 1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 헌법질서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낡은 논리라는 반박도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

○ 2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감한다면, 현재 헌법의 어떠한 측면, 어떤 의미가 제왕적 요소라고 생각하나?

○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하였다고 보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개헌 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현행 통치구조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8. 헌법 66조 1항은 대통령에 국민대표자의 지위를 부여했다. 대통령이 100%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하고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적 임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지지자, 진영에 기반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통령이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있어,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당선이 가능한 현행 단순다수대표제가 아닌 절대다수대표제가 헌법 취지에 맞다고 보여진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사항인가, 법률 개정 사안인가?

○ 절대다수대표제가 법률 개정 사항인지, 개헌사항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10.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51조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를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으나, 1960년 유신헌법에서 동일 조항에 '국가의 원수' 지위를 부여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안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국가 원수'의 개념은 대통령이 타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는 학계나 역대 개헌자문위의 의견이 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행 헌법의 '국가 원수'라는 개념이 대통령이 타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한 지위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과거에는 안보, 치안 유지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국가의 중심 임무이던 시대였으나 현재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임무가 된 시대이다. 국가의 규모, 역할이 커진 만큼 임무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생활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소득, 돌봄, 환경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 헌법은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함께 교육의 권리(제31조 제1항),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환경권(제35조 제1항)과 같은 여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함께 오래전 비준하였고, 이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비준된 국제조약으로서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사회권규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 그럼에도 종래에는 사회권이 자유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이분론적 인식하에 자유권에 비하여 사회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학계나 국제인권법의 최근 동향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경계가 모호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권도 국가의 존중 의무(권리 향유를 저해하지 않을 의무)외에 보호 의무(국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충족 의무(적절한 입법, 행정, 예산 사법 등의 기능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수반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유권도

형해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을 엄격히 구분하기 보다는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그 급부의 조건과 범위에 관한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형성으로 인하여 보장됩니다.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과제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사회적 기본권의 재판규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위와 같은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잘 대표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헌법 91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설정되었으나, 실질적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다양한 제정당 대표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에 협력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헌법 제91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자문회의입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요한 외교·안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및 정보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초당적 참여와 같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서 기본법, 일반법, 상식법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현행 법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5조를 변경하는 데에 후보자의 의견은? (외국사례 추가)

○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1조 제2항), 관련 법률에 의하면 결국 헌법재판관은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외국[3]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구성원이 동질화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여러 가치를 선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합니다.

○ 다만,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 여부는 사회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사법, 감사에 관련한 헌법기관의 장과 방송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정파에 따라 추천하는 일로 정치적 논쟁이 있다. 이를 탈피하여 수사·기소·감사와 방송언론 영역의 장을 임명하는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3) (참조각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7조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및 예비구성원은 법학 및 정법(政法)학을 전공한 자로 10년간 법조분야 직업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법 제1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로 재판관, 검찰, 대학교수, 공무원 또는 변호사 중에 임명하며, 전원은 충분한 학식과 15년 이상의 전문직 내지 해당 직에 재직 중인 경력을 가진 법률가이어야 한다.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영)방송사 사장 등의 기관장 임명에 별도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적 추천기구를 두는 데에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임명 과정에 보다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기관장 임명에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적 추천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직의 지위와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사회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5.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중지) 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후 기소 시 헌재 심판절차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일반론 외에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현직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 공백이 발생함. 헌법,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 유형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결정을 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의 궐위 시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임기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7.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도 없습니다.

○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한 행사의 적법 여부 내

지 당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도 없습니다.

○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한 행사의 적법 여부 내지 당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관 업무 특성상 법률가의 업무 수행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시민 보편적 합의인 헌법에 대한 해석과 재판은 더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함. 해외 주요국은 헍법재판관 자격 규정이 부재하거나, 헌법 교수, 행정공무원 등도 헌법재판관 자격을 가지도록 규정함. 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1조 제2항), 관련 법률에 의하면 결국 헌법재판관은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외국[4]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구성원이 동질화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여러 가치를 선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합니다.

---

4) (참조각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7조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및 예비구성원은 법학 및 정법(政法)학을 전공한 자로 10년간 법조분야 직업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법 제1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로 재판관, 검찰, 대학교수, 공무원 또는 변호사 중에 임명하며, 전원은 충분한 학식과 15년 이상의 전문직 내지 해당 직에 재직 중인 경력을 가진 법률가이어야 한다.

○ 다만,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 여부는 사회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 관련하여 당시에는 '서울=수도'가 관습헌법이라고 결정, 관습헌법에 의해 국민 삶 영향받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가능한지? 후보자 의견은?

○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심판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만 규율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소정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하였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과거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2004년과 2024년에 어느 정도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 2024년 현재 세종시는 주요 정부 부처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행정의 중심도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수도권 집중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절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해외 사례 중 행정수도 옮기는데 헌법적 결정한 사례, 또는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 독일과 브라질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이전하면서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였고, 이 외에도 러시아, 스페인 등 헌법에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에 대한 헌법적 결정을 한 해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